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68
----------	------

제출연월일 : 2019. 5. .
발의자 : 김 낙 주 의원

1. 제정이유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관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이·미용 서비스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다.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안 제4조)

라.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게 포상(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5. 16 ~ 2019. 5. 27(1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전국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10.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국 농식품위생과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하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기타 참고자료

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경기 광명시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12.29.	사회복지국 위생과
경기 부천시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04.09.	행정국 식품안전과
경기 성남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04.30.	환경보건국 식품안전과
경기 안양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8.03.29.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충북 제천시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7.12.29.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천안시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6.07.01.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30.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8.04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09.24.	복지건강국 식품의약과